



독일 전자거래 단일화법(일명 ‘텔레미디어 법’)

I. 제정 법률

명칭	전자거래단일화법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 Vereinheitlichungsgesetz : EIGVG)
약칭	텔레미디어 법(Telemediengesetz : TDG)
제정일	2007. 1. 18. 제정, 2007. 3. 1. 발효
성격	연방법

II. 제정 배경과 진행경과

1. 제정 배경과 목표

전자거래 단일화법 제정 이전 독일법은 미디어(Media)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텔레서비스(Teledienst)와 뉴스, 매거진이나 신문 등 인터넷 상으로 접속가능한 여론형성과 관련한 서비스인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로 구분해왔다. 이 중 텔레서비스(Teledienst)는 텔레서비스법(Teledienstgesetz; TDG)을 통해 연방차원에서 규율되어 왔으며,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는 미디어서비스국가조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번 법제정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텔레서비스(Teledienst)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를 더 이

상 구분하여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독일정부는 지금까지 연방법과 주법 내에서 각각 규율되어 오던 텔레서비스(Teledienst) 및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에 대한 경제활동 관련 규정들을 연방법으로 통합시켜 규율하기 위해 ‘전자 거래 단일화법’을 제정하였다.

2. 입법 진행경과

2006. 06. 14	독일정부의 입법안 확정
2006. 09. 22	독일 상원 심의
2006. 01. 18	정부의 입법안에 기초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정
2007. 03. 01	발효



III. 주요 내용

전자 거래 단일화법의 핵심은 새로이 제정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이다. 이 법의 발효로 텔레서비스(Teledienst)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 부문을 규율하기 위해 지금까지 적용되던 3가지 법률, 즉 텔레서비스법(Teledienstgesetz; TDG),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 미디어서비스국가조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이 폐지되었으며, 방송국가조약(Rundfunkstaatsvertrag; RfStV)은 개정되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전 법률의 주요내용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며, 다음은 주요 변동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

1. 텔레미디어(Telemedien) 개념의 도입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에서 텔레미디어(Telemedien)는 텔레(Tele-)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의 복합어이다. 텔레미디어(Tele-media)에 속하는 서비스는 Amazon, eBay, Lycos 등과 같은 웹숍(Webshop), Web mail service, 날씨 및 교통정보와 같은 정보 서비스, Podcasts, 채팅 룸, dating-communities, Webportal, Blog 등이다.

온라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항들은 앞으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을 통해 규율되며 언론상의 주의의무(journalistische Sorgfaltspflicht) 등 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방송 및 텔레미디어(Telemedien)를 규율하는 국가조약(Staatsvertrag)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다.

2. 스팸 메일

텔레미디어법은 스팸메일을 질서위반행위(Ordnungs-

widrigkeit)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전자우편으로 상거래 관련 서신을 발송할 때에는 머리말 부분과 용건 란에서 서신의 상업적 특성을 은폐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신자가 서신 내용을 보기 전에 발신자 확인 또는 서신의 상업적 성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머리말 부분과 용건 란을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 은폐 또는 은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광고성 이메일은 발신자와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만일 이메일 발송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 위반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텔레미디어법은 명시적으로 상업적 특성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시, 제 16조, 제 3조에 의거하여 최고 50,000 유로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팸메일을 퇴치하려는 시도는 분명 좋은 의도이었으나 스팸메일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50,000 유로 벌금으로 직업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 스팸메일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의 조사를 누가 담당하는가의 문제와 스팸메일 방지에 어느 정도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원래의 안대로라면 연방 인터넷 사무국(Bundesnetzagentur)이 이 임무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 한편 만일 각주의 검찰, 경찰 등 치안 유지 기관들이 감시와 유지 임무를 맡을 경우 관계 당국의 기술적 노하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됨으로써 이 규정이 스팸메일 퇴치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정보요구권

전자 거래 단일화법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의를 불러일으킨 부분은 특히 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이다.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검찰과 법원만이 사용자에 관한 현존 저장 데이터나 사용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이전에는 음악산업이 저작권 위반자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텔레미디어법의 제정으로 이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 일어났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 외에도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등도 직접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형사상 소추(Strafverfolgung)나 위험 방지(Gefahrenabwehr)를 담당하는 검찰 및 법원 등 정부기관들
- ② 연방 및 주정부 소속 헌법수호기관(Verfassungsschutzbehörde)과 연방정보기관(Bundesnachrichtenagentur)
- ③ 군사정보기관(Militärische Abschirmdienst)
- ④ 저작권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들

IV. 전자거래 단일화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 정부는 정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법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전자거래 단일화법을 제정하였다.

텔레서비스(Teledienst)와 미디어서비스(Medien-dienst)간의 복잡한 구분을 없앴으로써 텔레서비스

와 미디어서비스 부문에 처음으로 단일화되고 미래 지향적인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거래에서의 법적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스팸메일 퇴치에 중요한 국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스팸메일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후속 조치 및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참고자료

전자거래단일화법 :

<http://www.bmwi.de/Dateien/BMWi/PDF/Zukunft-Ebusiness/elgvg-tmg-gesetz,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
Teledienstrecht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tmg/gesamt.pdf>

관련 법률 성립배경에 관한 자료 :

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Artikel/2006/06/2006-06-14-mehr-schutz-vor-unerw_C3_BCnschter-werbung.html

<http://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mitteilungen,did=189062.html>

<http://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mitteilungen,did=140388.html>

오 윤 섭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